

회 의 록

[제1안] 도시계획시설(녹지, 주차장) 변경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녹지, 주차장) 변경 결정(안)

- 구 분 : 주차장 폐지
- 사업명 : 다산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 위 치 : 신당동 826-1번지 일대
- 면 적 : 4,275.3m²

: 제1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도시계획시설(녹지, 주차장)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의 안건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 본 안건은 주민들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한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 의견 없으시다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는데 있어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안]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 변경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 변경 결정(안)

- 구 분 : 공공공지 폐지 및 주차장 변경
- 사업명 :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 위 치 : 신당동 52-7번지 일대
- 면 적 : 337m²

: 제2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의 안건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 2년 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복결정 심의 시, 교육시설을 원하는 주민의견은 없었습니까?

: 그 당시 주민의견 중 교육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은 주관부서로부터 들은 바 없습니다.

: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교육 인프라 시설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늦게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지금 현재 사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하에만 주차장을 하는 것입니까?

: 맞습니다. 지하 2층부터 주차장이며, 지하 1층~지상 3층 부대 시설은 교육혁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위 공간에 흙이 덮이고 나무가 심어지며 공원이 되는 것이며, 교육시설을 세우려는 곳도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이 되는 것입니까?

: 네. 다음 도면을 보시면 모두 지하를 표시한 것입니다. 지하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형성됩니다.

: 이 곳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나무를 심고, 토피를 했을 때 하고, 건물 세울 때 지상층 하중이 다르기에, 그 부분에 있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은 별도의 설계변경을 통해 검토 중입니다.

- : 지적사항에 대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 교육시설이니까 교통영향 평가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테지만, 아이들의 동선과, 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 안전을 중점으로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님 지적사항을 가능한 반영토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 건축계획이 수립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되는게 맞습니까?
- : 별도 건축 심의받을 계획입니다.
- :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면적이 너무 작는데, 대상이 맞습니까?
- :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며, 그 전에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 : 서울시 조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추가로 되는 램프의 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인가요?
- : 네.
- : 옆에 구립 신당도서관과 동화나라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설치되는 시설의 공원과 연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 : 계획을 수립한 주관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도서관에서 기존 3층의 옥상 녹화된 부분과 연결통로를 통해 기존 주차장 옥상 녹화부분을 이용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도 연결통로가 있어 기존 주차장의 옥상녹화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옥상녹화가 노후되다 보니 이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이 조성되면,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 신축 준공되기 전, 기존 주차장 옥상에서 다문화 행사나 중구 행사가 이뤄졌는 점을 고려하여 도서관과 어린이집 등 인접지와의 연결에 신경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270면의 주차장이 계획되었는데, 공영 주차장의 기둥은 사각과 원형 중 어느 것으로 합니까? 원형으로 한다면 여성분들 및 노인분들의 주차가 아주 용이합니다. 황학동 같은 경우 입구 부분에 원형으로 시공하여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하기에 아주 편리하므로, 하중에 무리 없다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에 설계 의뢰하여 설계를 실시하는데, 기둥 면적이 많이 커져 주차면수가 줄어듭니다. 현재 설계 공모를 통해 결정되어, 건축과로부터 당장 변경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안된다는 겁니까?

: 건축과에서 원형기둥으로 변경 시 주차면이 약 4~50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목적에 반하게 됩니다.

: 주차면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 건축 구조상 원형기둥을 하면 단면이 커집니다. 이미 골조가 올라가 있어, 사각으로 시공 중에 원형으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주차 관련 규정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폭이 얼마가 되죠?

: 2.3m × 5.0m입니다. 2019년 2월부터 폭은 2.5m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5m 같은 경우 굉장히 넓습니다. 현 주차장들은 너무 협소하므로,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라인 표시 및 회전반경이 클 수 있도록 시공 중이더라도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 주차장 설치기준은 언제 개정되는 것입니까?

시행일이 2019년 2월이며, 이때부터 허가 시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을 재건축 및 확충할 계획이 있는데 그때는 해당 기준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시다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는데 있어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앞으로 주차장을 계획할 때 사각형 기둥보다 원형기둥으로의 설계, 주차 폭 기준 준수 등 반영하셔서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단순히 주차면수보다 편의성을 생각하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3안]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폐지)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폐지) 결정(안)

- 구 분 : 사회복지시설 폐지
- 위 치 : 신당동 132-10번지 일대
- 면 적 : 379.4m²

: 제3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폐지 결정(안)』에 대한 심의 안건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 제1안의 대법원 판결 및 진행사항과 매우 유사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 의견 없으시다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는데 있어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4안]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 결정(안)

- 구 분 : 공공공지 폐지
- 위 치 : 필동 59-4번지 일대
- 면 적 : 315m²

: 제4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폐지 결정(안)』에 대한 심의 안건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중구 내 건물이 오래되고 다시 도시계획을 한다면, 개개인 사유지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다 가정할 경우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 도시계획 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부분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 전체에서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주민을 설득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안건은 중구발전을 위해 계획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을 통과시켰는데, 대법원의 판례를 예를 들어 개인 사익이 침해된다면, 아니 알박기를 끝까지 한다면 사업 추진도 못하고 그에 대한 보상비는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중구발전에 저해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중구적 문제와 관련하여 딱 부러지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부 다 이와 같이 폐지한다면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의 사익이 침해된다면 계획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모두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취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시설을 결정할 때 그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부서와 도시 계획하는 저희 부서가 더 많은 소통을 하여,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소통한 후에 시설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만약 어떤 계획이 있어 취소된다면, 취소되는 만큼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비를 더 많이 주면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반대하는 사유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중구발전을 위해 사용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엄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 본 안건과 결정 중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규모의 문제였습니다. 규모가 작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그때 당시 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충분한 보상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고, 간사님이 얘기하신 대법원 판결의 얘기는 사익이 공익보다 낫다기보다, 판결의 주요 취지는 공익이 사익을 침범해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때입니다. 본 안건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지만, 좀 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 :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엄중하게 타당성에 있어 심도 있게 토론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 비슷한 얘기지만, 공익과 사익을 비교,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을 또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익을 위한다면 어떻게 공익을 위해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잣대를 놓고 잴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 :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애문화관광거리 조성은 중구청에서 2013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3년 전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까?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도 여기 위원회실까지 와서 의견을 교환하고 접촉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충분한 대화도 있었고, 중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류승룡 씨의 서애문화광장을 조성하고자 하여, 중구청에서 또 몇 년간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확장 및 보도 포장을 하여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어서 동국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 조성을 하려면 광장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 당시 광장이 협소하다는 의견도 있었습시다만, 대지 감정가가 비싸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향후 추가확장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주민들의 집단민원 의견이 있다고 하여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것은 큰 사업이고 한번 취소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변 인프라로 봤을 때 전체적 의견을 들어 봐야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리 조성에 대해 찬성하는 주민 의견이 더 많습니다. 예전 상가가 영업이 안 되고 했는데, 거리 조성되니 영업이 더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아쉽습니다. 본안건 폐지를 보류하고 아주 심도 있게 각종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저희가 어렵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정할 당시 정말 고통을 겪고 지정했는데,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와 준하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도시계획시설들, 도시계획위원회 민원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결정 당시 검토 시, 다른 안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깊게 다시 해가면서 폐지로 가닥을 잡을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첫 번째 안건은 판례가 나왔으니까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의 요지를 인용해서 다른 안건도 동일하게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요지는 민원이 들어오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익과 공익을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이 사익에 준하지 않는다면 공익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이니까 제3안과 제4안은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을 결정했을 때 당시의 도시계획위원회나 행정부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나름대로 공익이 더 우위에 있다고 해서 시설 결정한 것입니다. 저도 2017년 3월부터 두 번째 심의에 참석했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고, 우리가 신중하게 거의 부결시키려는 것을 마지막에 많이 수정하고 가결했었습니다. 신중하게 했는데도 그러한 사례가 나왔다 하여 무조건 알 박기하는 것은 그때도 우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우려했던 사항인데 대법원 소송을 가서 패소한 것도 아닌데 이미 졌으니까 폐지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으며, 제3안은 원안 가결기로 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인 제4안은 비교해보고 공익이 사익보다 준하지 않다는 논리가 있어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폐지 결정할 텐데, 대법원 판례만을 갖고 폐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2017년 3월 28일 1,170명이 반대 집단 민원 제출한 분들과, 2018년 9월 7일까지 지역주민 찬성자 면담을 하셨는데, 그때 찬성자가 더 많았습니까?

: 그땐 반대하는 민원인들만 만났었습니다.

: 제 지역구가 필동입니다. 서양호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남대문시장-명동-충무로-필동24번가-서애문화광장-떡볶이광희문-동대문 쪽으로 가는 것을 큰 프로젝트 그리고 있으신데, 여기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뤄 놓은 부분을 대법원 판례로 폐지하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존중합니다. 동국대학교 내에서 필동 지역민들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대외협력단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생에게 관계를 물어봤는데, 필동이 살아나야 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제시하셨었기도 하고,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하거나, 청장님이 서애문화마당 말고 다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관계, 쉽게 말해 신촌, 홍대 및 이태원 앞은 되는데 우리 중구는 왜 그렇게 못 만드는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충무로 국제 영화제도 있지만 서양호 청장님께서 동국대 연극영화과가 아주 우수하니까 그런 영화제를 제시하고, 그 지역에 대해 매칭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 판례 하나만 가지고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익을 우선한다고 해서 민원 제기될 테니,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 : 홍대는 홍대의 문화가 있고, 동국대학교는 그와 같은 문화가 없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 주변에 특성화된 것이 없어가지고 서애길을 전부 정비하고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해왔고, 현장을 방문하며 반대하는 분들을 만났었습니다. 우리가 공익이 앞서니까, 그대로 실현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했으면 합니다.
- : 본 안건이 간단하지 않은 게, 폐지되기 전까지 주민들이 재산권을 못 하게 됩니다.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까?
- : 공원녹지과에서 서애문화광장 추진을 했습니다. 도로에 대한 서애길 보도정비는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했습니다.
- : 도심재생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 : 실시설계는 도로시설과에서 했었습니다.
- : 도로시설과에서는 공사를 한 것이고, 기본 설계는 시장경제과가 맞습니까?
- : 네. 맞습니다.
- : 광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 공원녹지과로 넘어왔습니다.
- : 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하고 협의는 어느 과에서 실시한 것입니까? 도로시설과입니까?

- :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 : 공원녹지과에서 하신겁니까?
- : 네. 그렇습니다.
- : 그럼 최근에 변호사 자문은 어느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다산동 공영주차장 관련 소송 패소한 이후 다른 사업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 : 본 안건 관련하여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 : 없습니까? 시장경제과입니까? 어디서 받은 건지 아십니까? 안전 건설국장님
- :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본 안건의 사업을 중지 및 폐지하더라도,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지난번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보다 본 안건의 사익 침해 부분이 더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하여 추후에 사업을 하여도 문제는 없겠지만, 사유재산에 대해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빨리 처리하고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국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 60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건물주와 토지주는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보니까 그곳에 계신 세입자나 건물주들은 '재산상의 피해보는데, 쉽게 할 수 없는데 왜 공공공지로 묶어두느냐?'라는점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 네. 공원녹지과장님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사업할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해도, 주민도 피해 보고,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2013년부터 도시계획위원님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도 해주시고, 또 집단 민

원인 의견청취도 하시며 이렇게 결정을 해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될 거라면, 어떤 의사결정도 필요합니다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결국 주민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구청에서 사업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자문이나 추진부서의 검토도 있을 순 있겠지만, 그조차도 지금은 실익이 없는 상황이란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가지고, 시간만 끄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니, 본 안건의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투자비용 예산은 하반기에 추경이 되든, 반영이 되었겠죠. 사업 결정되었으면 서둘러 시행하려고, 예를 들어 하반기에 특별 예산 구성하던지, 추경을 하던지, 서울시에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 왜 확보를 못 하셨습니까?

: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그럼 하반기에 예산확보를 못하셨다는 겁니까? 금년도 6월에 결정되었으니 금년 예산확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앞에 설명되었다시피 금년 8월 20일 하고, 9월 7일에 서양호 구청장님께서 양쪽 주민들에게 예산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반대도 많은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 서양호 구청장님께서 민원해결 차원도 있고, 이 문제를 갖고 대법원을 갈 경우 승소할 확률이 낮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그걸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 판례를 비추어 그런 판단을 하신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본 안건을 갖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대법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렵게 2~3년간 현장답사 및 주민 대화를 하며, 소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씩도 했습니다. 이렇

게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어렵게 도시계획을 결정한 겁니다. 결정을 했으면 구청에서는 모든 걸 확정된 것입니다. 그럼 책임성 있게 하반기에 예산 추경이 안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흔들리고 하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사업까지 결정한 것입니다.

: 도시계획 결정되었다고 해서 모두 추진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건 의결 사항입니다. 조금 전 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서애문화거리 조성도 좋지만, 대학도 동국대학교가 있으니까, 연대나 다른 대학교는 거리환경을 변화시켜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거리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송을 제기되어도 그렇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어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은 걸릴 겁니다. 한 번 결정되었으면 한 길로 쪽 가서 하셔야 합니다. 내년 예산 계획을 세우고, 세입자들은 확정될 때까지 영업하며, 구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전체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며, 이 사업이 난관에 부딪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결정을 해주셨는데, 사업이 잘 풀려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과 보상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워낙 반대가 심하고, 이 사업을 안 한다 하여 전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안전건설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있다고 사업이 2~3년 이상 시간이 지체된 것들이 서울시 사업 중에 많습니다. 지금 와서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하여 흔들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 민원이 있다고 해서 중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추진경위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답변이 그렇게 되어 그리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민원이 있어 취소를 하거나 다산동 공영주차장 소송에서 패소해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가보다, 이 사업의 본질도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서애길이 상당히 보행환경 조성이나, 문화예술 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해서 이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판단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리의 조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조성하여 거리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이 꼭 이런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가로수길, 경리단길, 연희동 등 같은 곳은 이런 부분에 있어 하드웨어만 가지고, 도시계획적인 부분만 갖고 공간이나 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서애길의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디자인이나 콘텐츠 쪽으로 보강하여 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란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나 변경이란 것은 그 자체로는 완결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밑받침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원래의 목적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결정되었던 부분에 대한 변경은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변경에 따라서 다시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깐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전에 관련된 분들께서 검토를 하고 결정한 것인데,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구청장님 의견 및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보류를 한 번 하시고 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다른 위원님들 의견 또한 듣고 싶습니다.

: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저희가 5월에 가결하여,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그 중간 사이 변한 건 구청장님이 바뀌신 겁니다. 5월에

결정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폐지를 시키겠다는 말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 가결된 것은 작년 아닙니까?

: 가결은 2017년 5월에 되었습니다.

: 네. 그러니까 넘어오는 그 중간과정에서 바뀐 부분은 그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로 봤을 때 그만큼의 기간이 필요하고, 위원회에서도 결정하기까지의 노력만큼의 폐지할 때도 그만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 네. 이의 없으시다면 필동2가 59-4번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안건은 『**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5안]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완화

☐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완화

- 위 치 : 신당동 366-438번지외 1필지
- 대지면적 : 688m²
- 도시계획 :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일반미관지구
- 요청사항 :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완화

: 제5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완화』에 대한 심의입니다. 제안 설명 해주 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page 배치도 상 건물사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것입니까? 입면도와 단면도를 보면 떨어져 있는 건물 같지만, 배치도에서만 연결이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큰 매스하고 작은 매스부분에 지진이 발생하면 그냥 쓰러져버립니다. 이부분에 대해 정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안건은 높이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축 심의 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 허가 시 심의 등을 통해 검토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건축 과로 의견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건축과에 의견을 통보하겠습니다.

: 주변 지형도 및 단면도를 볼 수 있습니까? 인접 2필지라는게 대상지 좌우 2필지씩인데, 본 안건은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대상지일 경우 좌우 및 앞뒤로 똑같이 인접 두필지씩 보는 것 맞습니까?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 대상지는 다산로에 접하고 있어 앞 2필지는 비교 검토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향후 다른 대상지가 신청된다면 앞·뒤 인접 2필지를 통해 높이 완화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 없습니다.
- : 다른 의견 없으시다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 하는데 있어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 추가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사진



일시	2018.11.15.	장소	기획상황실 (본관 3층)	사진 설명	2018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장면
----	-------------	----	------------------	----------	---------------------------